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세부평가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CP등급평가 세부평가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

1.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도 및 그 이후 CP 등급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들의 효과적인 CP 운영 및 등급평가 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평가신청 기업의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CP등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과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회가 CP등급평가 세부 측정지표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3. 다만,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점수 및 최종 평가등급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 및 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실제 CP 운영 실태 및 CP 규정 등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과 CP등급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오니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CP등급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부여된 가산점 내역, 생략지표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 확정 전 별도의 의견 조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평가 대상기간은 평가신청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CP 운영 현황의 지속성,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특정 지표의 경우 평가 대상기간 직전년도의 실적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가이드라인 활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cp@kofair.or.kr, 1588-14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I. Constructi on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 침의 수립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 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 의 중요한 요소임 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필요가 있다.	C1.1 최고경영자 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 동강령, CP 방침 선 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 하여 확고한 CP 실 천 의지를 공개적으 로 표명하였는가?	(A+/A) 최고경영자가 직접 CP 실천 의지 를 표명하고 CP 실천 의지 및 행동강령 또는 준수정책을 기업의 소속 전 임직원 과 외부 홈페이지에 공표한 경우로서 행 동 강령 또는 준수 정책이 CP 실천 의지 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정도 및 외부 홈페이지에 공표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최고경영자가 직접 CP 실천 의지 를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강령 또 는 준수정책 없이 CP 실천의지만 기업 소속 임직원과 외부 홈페이지에 공표한 경우로서 CP 실천의지의 공표 대상 임직 원 범위 및 외부 홈페이지에 공표한 범위 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최고경영자가 직접 CP 실천 의지를 표 명하였으나, 구체적 인 행동강령 또는 준수정책 없이 CP 실천의지만 기업 소 속 임직원에게만 공 표된 경우	최고경영자가 직접 CP 실천 의지를 표 명하였으나, 이를 기 업 소속 임직원 및 홈페이지에 공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CP 실 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최고경영자의 CP 실천 의지 및 공 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E- mail, 인트라넷망, 홈페이지, CP 실천 의지 관련 행동강령 또는 준수정책 등)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 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 적으로(예: 분기, 반 기) 검토하였는가?	CP부서에서 최고경영자에게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분기 1회 이상 보고 한 경우로서, 보고의 범위 및 최고경영자 의 후속조치 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부서에서 최고경영자에게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연간 1회 이상 보고 한 경우로서, 보고의 범위 및 최고경영자 의 후속조치 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부서에서 자율준 수관리자에게만 조 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분기 1회 이상 보고한 경우	CP부서에서 자율준 수관리자에게만 조 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연 1회 보고한 경우	CP부서에서 최고경 영자 또는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 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부서에서 최고경영자 또는 자 율준수관리자에게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보고한 내부 보고문서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 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 (예: 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지 시하였는가?	(A+/A) 최고경영자가 CP 실천의지를 전 부서의 사업목표에 반영하도록 직접 지 시한 경우로서 사업목표의 반영 범위 및 실제 반영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최고경영자가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부서(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 이 높은 부서 및 CP 담당 부서 등)의 사 업목표에 반영하도록 직접 지시한 경우 로서 사업목표의 반영 범위 및 실제 반영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가 CP 실천의지를 전 부서 사업목표에 반 영할 것을 권장하였 고, 일부 부서에서 사업목표에 CP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CP 실천의지를 전 부서 사업목표에 반 영할 것을 권장하였 으나, 사업목표에 반 영된 사실이 없는 경우	최고경영자 또는 자 율준수관리자가 CP 실천의지를 사업목 표에 반영하도록 지 시 또는 권장한 사 실이 없는 경우	① C1.1.1 입증서류 ② CP 실천의지 일체 또는 일부를 사 업목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거나 요 청한 내부 보고문서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 Constructi on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 침의 수립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 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 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필요가 있다.	C1.1 최고경영자 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4 최고경영자가 조직 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페 인, 행사, 선포식, 표 창 등)에 직접 참여 하였는가?	최고경영자가 CP 문 화 촉진 관련 캠페 인, 행사, 선포식, 표 창 행사에 연 4회 이상 직접 참여한 경우	최고경영자가 CP 문 화 촉진 관련 캠페 인, 행사, 선포식, 표 창 행사에 연 3회 직접 참여한 경우	최고경영자가 CP 문 화 촉진 관련 캠페 인, 행사, 선포식, 표 창 행사에 연 2회 직접 참여한 경우	최고경영자가 CP 문 화 촉진 관련 캠페 인, 행사, 선포식, 표 창 행사에 연 1회 직접 참여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CP 문화 촉진 관련 캠페인, 행사, 선포 식, 표창 행사에 연 2회 이상 직접 참여 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CP 문화 촉진 관련 캠페인, 행사, 선포 식, 표창 행사에 연 1회 직접 참여한 경 우	최고경영자 또는 자 율준수관리자가 CP 문화 촉진 관련 활 동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문화 촉진 관련 활동 개최 및 결과 보고문서(참석자 명단 포함)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 의 수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 준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 (지침서, 절차 서 등)가 있는가?	(A+/A) CP 운영에 관한 기준·절차가 모두 포함된 문서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 어 마련된 경우로서 기준과 절차의 내용 수준 및 체계적인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B+/B) CP 운영에 관한 기준·절차가 모두 포함된 문서가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마련된 경우로서 기준과 절차의 내 용 수준 및 체계적인 정도에 따라 차등하 여 평가	CP 운영에 관한 기 준·절차를 CP 부서 장의 승인만 얻어 활용하고 있는 경우	CP 부서에서 CP 운 영에 관한 기준 또 는 절차 일부만 마 련한 뒤 CP 부서장 의 승인만 얻어 활 용하고 있는 경우	CP 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평가 대상년도의 CP 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부 보고문서		
			C1.2.2 CP 운영에 관한 기 준과 절차가 기업 업무환경 및 공정거 래법규의 변화에 따 라 주기적(최소 연 1 회 이상)으로 수정 및 보완되고 있는 가?	(A+/A) CP 운영에 관한 기준·절차가 기업 업무환경 및 공정거래법규의 변화에 따 라 연 2회 이상 수정·보완된 경우로서 수 정·보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B+/B) CP 운영에 관한 기준·절차가 기업 업무환경 및 공정거래법규의 변화에 따 라 연 1회 수정·보완된 경우로서 수정·보 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운영에 관한 기 준·절차가 수정·보 완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CP 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평가 대상년도의 CP 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부 보고문서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I. Constructi on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 침의 수립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 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 의 중요한 요소임 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필요가 있다.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 의 수립	C1.2.3 CP 운영에 관한 목 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A+/A) CP 운영에 관한 목표 전체가 측 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로 관리된 경 우로서 정량화 된 지표의 합리성, 중요도, 비중, 목표 설정 및 지표 관리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평가 대상년도에 CP 운영에 관한 목표 전체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 표로 관리된 경우로서 정량화 된 지표의 합리성, 중요도, 비중, 목표 설정 및 지표 관리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운영에 관한 목 표 일부가 측정 가 능하고 그 중 일부 가 정량화 된 지표 로 관리된 경우	CP 운영에 관한 기 준 또는 절차에 CP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지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CP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운영에 관한 목표, 정량화 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CP 운영에 관한 목표, 지표를 설정 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 한 내부 결재문서 ③ CP 운영에 관한 지표의 측정 및 활용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C1.2.4 최고경영자에서 일 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 기준을 최 고경영자부터 CP담당 임직원까지 정의 하고 이를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 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로 서, 책임과 권한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 기준을 최 고경영자부터 일선 관리자까지 정의하고 이를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 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책임 과 권한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차등하 여 평가	CP 부서에서 CP 운 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였으 나, 최고경영자 등 임원이 아닌 CP 부 서장에게만 보고하 였거나 보고한 사실 이 없는 경우	CP 운영에 대한 책 임과 권한을 정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CP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 의한 내부 보고문서	
				C1.2.5 개정된 CP 운영 기 준 및 절차를 임직 원들에게 배포하고, 개정 관련 정보의 이해를 도모하였는 가?(예: 개정 교육, 업무 관련자 인터뷰 등)	개정된 CP 운영 기 준 및 절차 관련 정 보 일체가 회사 전 임직원에게 배포되 고, 교육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이해를 도모한 경우	개정된 CP 운영 기 준 및 절차 관련 정 보 일체가 회사 일 부 임직원에게 배포 되고, 교육 및 인터 뷰 등을 통해 일부 임직원의 이해를 도 모한 경우	개정된 CP 운영 기 준 및 절차 관련 정 보 일체가 회사 일 부 임직원에게 문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형태로만 배포된 경 우	개정된 CP 운영 기 준 및 절차 관련 정 보 일체가 회사 일 부 임직원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형태로만 배포 된 경우	개정된 CP 운영 기 준 및 절차 관련 정 보 일체가 회사 일 부 직원들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형태로만 배포 된 경우	개정 전 CP 운영 기 준 및 절차만 배포 한 경우	CP 운영 기준 및 절 차를 배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I. Construction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 침의 수립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 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 의 중요한 요소임 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필요가 있다.	C1.3 CP운영에 관 한 사항의 회 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 항이 내용, 방법, 주 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 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 트, 내부공시 등)	(A+/A)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부평가 지표에서 제시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 한 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 경우로서, 외 국어 지원의 다양성, SNS 및 동영상 컨텐 츠 활용 실적, 홈페이지 및 내부공시 활 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인터넷, 내부 직원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기업 내부의 전 임직원들에게만 공시·공 표되고 있는 경우로서, 외국어 지원의 다 양성, SNS 및 동영상 콘텐츠 활용 실적, 홈페이지 및 내부공시 활용 정도를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CP 운영에 관한 사 항이 내부 임직원들 에게 공시·공표되고 는 있으나 대상 임 직원의 범위가 한정 적이거나 인쇄물 형 태로만 제공되고 회 사 외부에서 활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없음)	CP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공시·공표하지 않는 경우	①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공표 한 내부 보고자료 ※ CP 운영에 관한 사항 예시: (이전 가이드라인 내용 인용)	
				C1.3.2 CP 운영에 관한 사 항이 회사의 임직원 들에게 올바르게 전 달되고 있는가?(예: CP 운영 관련 게시 글 읽기 수, 동영상 구독자 수, E-mail 확인자 수 등)	임직원들에게 3가지 이상의 방안(예: 사 내 게시판 게시, E- mail 통지, 안내 동 영상 구독 수 등)을 활용하여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 고, 게시글 읽기 수 등 측정 가능한 방 법을 통해 전달수준 을 확인한 경우	임직원들에게 3가지 이상의 방안(예: 사 내 게시판 게시, E- mail 통지, 안내 동 영상 구독 수 등)을 활용하여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 고, 게시글 읽기 수 등 측정 가능한 방 법을 통해 전달수준 을 확인한 경우	임직원들에게 2가지 이하의 방안(예: 사 내 게시판 게시, E- mail 통지, 안내 동 영상 구독 수 등)을 활용하여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 고, 게시글 읽기 수 등 측정 가능한 방 법을 통해 전달수준 을 확인한 경우	CP 관련 부서 등 일 부 임직원들에게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게시글 읽 기 수 등 측정 가능 한 방법을 통해 전 달수준을 확인한 경 우	CP 관련 부서 등 일 부 임직원들에게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전달 수준을 확인하지 않 은 경우	CP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①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전달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C2. 최고 경영 진의 지원	자율준수프로그램 이 효과적으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 게 명확하고 충분 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 한 인적, 물적 자원 이 제공되는 등 최 고 경영진의 전폭 적인 지원이 요구 된다.	C2.1 자율준수 관 리자의 임명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 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 였는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에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관 리자로 임명한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 에서 최고경영자를 CP 관리자로 직접 임명한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 가 아닌 기업의 인 사 부서 등에서 임 원이 아닌 중간관리 자 직원을 CP 관리 자로 임명한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 가 아닌 회사 인사 업무 부서에서 임원 이 아닌 직원(관리 자를 제외한다)을 CP 관리자로 임명한 경우	CP 담당부서는 있 으나 CP 관리자를 임 명하지 않은 경우	CP 담당부서 및 CP 관리자 모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① CP 관리자 임명 여부 및 주체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CP 관리자의 직위 등 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I. Construction (CP의 구축)	C2. 최고 경영 진의 지원	자율준수프로 그램이 효과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 율준수관리자 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 어야 하며, 조 직 규모에 적 합한 인적, 물 적 자원이 제 공되는 등 최 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 원이 요구된 다.	C2.1 자율준수 관 리자의 임명	C2.1.2 임명된 CP 관 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 과 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았는가?	(A+/A) 최 고의사결정기 구에서 임명 한 CP 관리 자가 CP의 기획, 감독, 성과 보고 등 과 같은 책임 과 권한을 부 여 받은 경우 로서 책임과 권한의 범위 정도에 따라 평가	(B+/B) 최 고의사결정기 구가 아닌 회 사 인사업무 부서에서 임 명한 CP 관 리자(임원 및 중간 관리자) 가 CP의 기획, 감독, 성과 보 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 을 부여 받은 경우로서 책 임과 권한의 범위 정도에 따라 평가	최고의사결 정기구가 아 닌 회사 인사 업무 부서 에서 임명 한 CP 관리 자(관리자가 아닌 직원)가 CP의 기획, 감독, 성과 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임명된 CP 관리자에 게 책임과 권한이 구 체적으로 부여되었 는지 여부 를 알 수 없는 경우	CP 담당부 서 및 CP 관리자 모 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① 임명된 CP 관리자 가 부여 받 은 책임과 권한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C2.1.3 임명된 CP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가 마련되 어 있는가? (예: 절차 서, 지침서 등)	(A+/A) 최 고의사결정 기구에서 임명한 CP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예: 절차서, 지침서 등) 가 마련된 경우로서 근거의 종류 와 내용에 따라 평가	(B+/B) 최 고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회사 인사 업무 부서 에서 임명 한 CP 관 리자(임원 및 중간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예: 절차 서, 지침서 등)가 마 련된 경우 로서 근거 의 종류와 내용에 따 라 평가	최고의사결 정기구가 아 닌 회사 인 사업무 부 서에서 임 명한 CP 관리자(관 리자가 아 닌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예: 절차 서, 지침서 등)가 마 련된 경우	임명된 CP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P 담당부 서 및 CP 관리자 모 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① 임명된 CP 관리 자의 독립 성을 보 장할 수 있는 근 거를 구 체적으 로 확인 할 수 있는 자 료	
				C2.1.4 CP 관리자 의 임명사 실 및 역할 등에 관 한 사항 이 임직원 에게 명 확히 공 표되었 는가? (예: 공표사 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 실 통보 등)	(A+/A)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 한 사항 일체를 임직원 에게 안 내한 경 우로서 공표 대 상 임직 원 범위, 공표방 법의 다 양성을 종합적 으로 감 안하여 차등 평가	(B+/B) CP 관리자의 임명사 실 및 역 할 등에 관한 사 항 일체 를 직원 에게만 안내한 경우로 서 공표 대상 직 원의 범 위, 공표 방법의 다양성 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 여 차등 평가	CP 관리자 의 임명사 실(구체 적인 역 할 및 독 립성 보 장 등에 관한 사 항 제외) 만 임직 원에게 공표한 경우	CP 관리자 의 임명사 실을 공 표하지 않은 경우	CP 관리 자가 임 명되지 않은 경우	① CP 관 리자의 임명사 실 및 역 할 등에 관한 사 항을 일 체를 안 내한 방 법, 안 내를 받 은 대 상자 목 록, 안 내 내 용을 구 체적으 로 확 인할 수 있는 자 료 (예: 안 내 E- mail(첨 부파일 포함) 및 수신자 리스트, 임명 공문서 수/발 신 목록 등)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I. Construction (CP의 구축)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C2.1.5 임명된 CP 관리자가 그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직위(예: 구매부서나 판매부서)와 무관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가?	(A+/A)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임명한 CP 관리자가 속한 부서가 그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구매, 판매, 영업, 조달, 입찰 또는 수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변동에 영향을 발생시키는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CP 관리자가 속한 부서의 독립성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B+/B)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가 임명된 CP 관리자가 속한 부서가 그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구매, 판매, 영업, 조달, 입찰 또는 수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변동에 영향을 발생시키는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CP 관리자가 속한 부서의 독립성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관리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그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구매, 판매, 영업, 조달, 입찰 또는 수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변동에 영향을 발생시키는 부서)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종사(겸직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관리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그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구매, 판매, 영업, 조달, 입찰 또는 수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변동에 영향을 발생시키는 부서)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종사(겸직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관리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① CP 관리자에 대한 근무부서 및 배정 직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정보(예: 인사기록카드, 사내 시스템 내 인사정보 현황 등)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A+/A) CP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CP 관리자 및 CP 담당부서(예: CP팀, 법무팀, CSR팀)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지원되고 집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CP 담당부서 인력 규모 및 예산 수준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확대된 경우로서 지원 및 집행의 적정성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B+/B) CP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CP 관리자 및 CP 담당부서(예: CP팀, 법무팀, CSR팀)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지원되고 집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관련 예산 규모(기업의 총 편성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매년 감소한 경우로서 지원 및 집행의 적정성, 예산규모 감소의 타당성(예: 기업 경영상황 악화 등)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된 사실은 있으나 CP 관리자 및 CP 담당부서(예: CP팀, 법무팀, CSR팀)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관련 예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 계획은 있으나 실제 집행된 사실이 없는 경우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CP 담당부서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현황(회사 총 규모 대비 CP 관련 인력과 예산 규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성·지정되어 있고,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직접 지정한 CP 관리자(상법에 따른 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부터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성·지정되어 있고,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인사 부서 또는 CHO(Chief Human resource Officer)가 지정한 CP 관리자(상법에 따른 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부터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성·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직접 지정한 CP 관리자(상법에 따른 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부터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성·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인사 부서 또는 CHO(Chief Human resource Officer)가 지정한 CP 관리자(상법에 따른 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부터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성·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인사 부서 또는 CHO(Chief Human resource Officer)가 지정한 CP 관리자(상법에 따른 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아닌 직원)로부터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CP 관리자를 별도로 구성·지정하지 않은 경우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기업 내규, 조직 운영계획 등) ② CP 관리자의 지정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사회 회의록, CP 관리자 임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문서 등)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1.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프로그 램 운영의 필수 지침서이다. 조직 은 자율준수관리 자의 책임하에 세 부지침서로서 활 용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 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 및 위험도 는 기업 또는 부 서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자 율준수편람은 기 업 또는 부서 특 성에 맞도록 작성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D1.1 내용의 독창 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조직 규모, 구조, 의사결정구조, 사업모델 및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조직의 다수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정부, 포함 3개 이상)의 의견을 반영한 경우로서 CP 운영기준 개선에 기여한 정도 및 내용의 충실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조직 규모, 구조, 의사결정구조, 사업모델 및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나, 조직의 다수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정부, 포함 3개 미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경우로서 CP 운영기준 개선에 기여한 정도 및 내용의 충실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조직 규모, 구조, 의사결정구조, 사업모델 및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나, 조직의 다수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정부, 포함 3개 미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경우로서 CP 운영기준 개선에 기여한 정도 및 내용의 충실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 및 이를 작성·배포 등 활용하기 위한 계획 관련 내부 보고자료	
			D1.2 내용의 충실 성	D1.2.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 제재 기준이 포함된 경우로서 소개된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범위, 개요 및 제재기준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A+/A)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대하여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개요, 제재 기준이 포함된 경우로서 소개된 공정거래법규의 범위, 개요 및 제재기준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대하여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개요, 제재 기준이 포함된 경우로서 소개된 공정거래법규의 범위, 개요 및 제재기준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또는 필수 법규를 단순 열거·나열하였을 뿐 제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평가 대상기간 동안 작성된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	
			D1.2.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A+/A)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CP 운영 관련 사례, 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FAQ 포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포함된 내용의 충실성 및 최근 경향의 반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CP 운영 관련 사례, 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FAQ 포함)이 중 절반 이상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포함된 내용의 충실성 및 최근 경향의 반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CP 운영 관련 사례, 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FAQ 포함)이 중 한 가지의 종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1.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필수 지침서이다. 조직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 및 위험도는 기업 또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자율준수편람은 기업 또는 부서 특성에 맞도록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1.2 내용의 충실성	D1.2.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A+/A)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조직의 각 업무별 또는 부문별로 모두 구분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이 제공된 경우로서 자율점검 방법의 구체성 및 세분화 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B+/B)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조직의 CP 부서 및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한해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이 제공된 경우로서 자율점검 방법의 구체성 및 세분화 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조직의 CP 부서에 한해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		
			D1.3 가독성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다양한 사용자를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는가?(예: 동영상 매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용 구분 제작 등)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동영상 매체, 간행물, 홈페이지 게시용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작되었으며, 그 밖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른 형태로도 제작된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동영상 매체, 간행물, 홈페이지 게시용 전자파일 형태 중 절반 이상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그 밖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른 형태로도 제작된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동영상 매체, 간행물, 홈페이지 게시용 전자파일 형태 중 1가지 이상의 형태로 제작된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동영상 매체, 간행물, 홈페이지 게시용 전자파일 형태로만 제작된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제작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매체,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용 전자파일, 인쇄된 간행물 등)	
			D1.4 활용 편의성	D1.4.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우선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CP 운영 부서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사전에 정의하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우선 배포한 뒤 부서의 활용실적을 분기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점검한 경우	CP 운영 부서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사전에 정의하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우선 배포한 뒤 부서의 활용실적을 분기 단위로 점검한 경우	CP 운영 부서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사전에 정의하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우선 배포한 뒤 부서의 활용실적을 연간 단위로 점검한 경우	CP 운영 부서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불특정 다수의 부서에 배포한 뒤 부서의 활용실적을 분기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점검한 경우	CP 운영 부서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불특정 다수의 부서에 배포한 뒤 부서의 활용실적을 연간 단위로 점검한 경우	CP 운영 부서는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불특정 다수의 부서에 배포 하였으나 활용실적을 점검한 사실이 없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 부서에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배포 대상 및 활용 여부 점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1.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필수 지침서이다. 조직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 및 위험도는 기업 또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자율준수편람은 기업 또는 부서 특성에 맞도록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1.4 활용 편의성	D1.4.2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임직원들이 회사 내·외부와 무관하게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일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임직원들이 회사 내·외부와 무관하게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접근할 수 있으나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요약본 또는 내용 일부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직원들이 회사 내부 인트라넷 및 인쇄된 간행물을 활용하여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접근할 수 있어 외부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인쇄물로만 제작되어, 일부 제한된 장소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제작된 인쇄물 내용으로는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요약본 또는 내용 일부만 확인 가능한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인쇄물로만 제작되어, 일부 제한된 장소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제작된 인쇄물 내용으로는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요약본 또는 내용 일부만 확인 가능한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CP 부서에서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임직원 배포용으로 제작·생산하지 않은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제작 방식(간행물, 전자파일 등) 및 회사 내·외부, 국내·외, 접근가능 시간의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파일 제공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주소,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 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D1.5.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가 일정하게 규정(최소 연 1회)되어 있는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검토하여 개정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월 1회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정례화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검토하여 개정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분기 1회로 정례화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검토하여 개정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분기 1회로 정례화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검토하여 개정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연간 1회로 정례화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검토하여 개정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례화 하지 않았으나, 평가대상기간 중 개정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검토하여 개정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를 정례화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 등 자료,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D1.5.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반기별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A+/A)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반기별로 검토하여 반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검토에 따른 개정 실적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연 1회 검토하여 반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검토에 따른 개정 실적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일부에 한해 연 1회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검토하여 반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일부에 한해 연 1회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검토하여 반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일부에 한해 연 1회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검토하여 반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검토하여 개정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의 작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이력 및 개정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업 내부에 자율 준수관행이 정착 되기 위해서는 임 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 로 경쟁법에 저촉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특히 최고 경영자 및 임원 (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행위의 가능 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들에게는 보다 집 중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D2.1 정기 CP 교 육	D2.1.1 조직의 연간 교육 계획에 임직원에 대 한 CP 교육이 포함 되어 있는가?	회사의 연간 교육계 획에 전 임직원에 대한 CP 교육을 월 단위로 수립한 경우	회사의 연간 교육계 획에 전 임직원에 대한 CP 교육을 분 기 단위로 수립한 경우	회사의 연간 교육계 획에 전 임직원에 대한 CP 교육을 반 기 단위로 수립한 경우	회사의 연간 교육계 획에 전 임직원에 대한 CP 교육을 연 1회 수립한 경우	회사의 연간 교육계 획에 CP 담당 부서 직원에게 대한 CP 교 육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CP 담당부서에서 부 서 소속 직원에 대 한 교육계획만을 수 립한 경우	CP 교육계획을 수립 하거나 검토한 사실 이 없는 경우	① CP 교육의 수립 여부, 교육 대상 등을 수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D2.1.2 CP 교육 계획에 계 층(예: 신입, 중간관 리자, 임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 된 교육 체계가 마 련되어 있는가?	CP 교육계획의 세부 내용이 임직원을 상 대로 계층별, 부서별, 업무 관련성별로 교 육 대상 및 교육 과정을 모두 구분하여 수립된 경우로서, 교육 대상의 범위, 교육 체계의 구성, 운영의 용이성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교육계획의 세부 내용이 직원들만을 상대로 계층별, 부서별, 업무 관련성별로 교육 대상 및 교육 과정을 구분하여 수립 된 경우로서, 교육 대상의 범위, 교육체계 의 구성, 운영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교육계획의 교육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교육 내용도 부서, 업무 관련성별로 전 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CP 교육계획을 수립 하거나 검토한 사실 이 없는 경우	① CP 교육의 수립 여부, 교육 대상 등을 수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D2.1.3 CP 교육계획에 필요 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예:교육 콘텐츠 개발비, 전문가 강의 료, 교육 대관료, 교 육 주관부서 운영 경비 등)되고 집행 되었는가?	(A+/A)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지 원되고 집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 산(기업의 예산에서 CP 교육계획을 목적 으로만 편성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한 예 산의 총액)이 평가 대상년도 이전 대비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로서 지원 및 집행의 적정성 및 교육계획의 지 속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B+/B)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지 원되고 집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나, 필요한 예산(기업의 예산 에서 CP 교육계획을 목적으로만 편성되 어 있음이 확인 가능한 예산의 총액)이 평가 대상년도 이전 대비 감소한 경우로 서 지원 및 집행의 적정성, 예산규모 감 소의 타당성(예: 기업 경영상황 악화 등), 교육계획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교육계획에 필요 한 예산이 집행된 사실은 있으나 별도 로 예산을 편성하였 는지 여부를 구체적 으로 확인할 수 없 고 평가 대상년도 이전 대비 집행액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경우	CP 교육계획은 수립 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이 집행된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CP 교육계획을 별도 로 수립하지 않은 경우	①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반 영 및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업 내부에 자율 준수관행이 정착 되기 위해서는 임 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 로 경쟁법에 저촉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특히 최고 경영자 및 임원 (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행위의 가능 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들에게는 보다 집 중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D2.1 정기 CP 교 육	D2.1.4 CP 교육강사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 적으로 마련하고 그 에 따라 강사를 선 정하였는가? (예: CP 분야의 전문 지식,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 등을 보유한 자를 적격자로 검 토)	CP 교육강사 선정 시 자율준수관리자(또 는 최고경영자)에게 CP 분야 전문지식, 업무 경험, 업무 경력을 모두 선정 요건 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고 그에 따라 CP 교육강사를 선정한 경우로서, 기준의 구 체성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교육강사 선정 시 자율준수관리자(또 는 최고경영자)에게 CP 분야 전문지식, 업무 경험, 업무 경력 중 일부를 선정 요 건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고 그에 따라 CP 교육강사를 선정한 경우로서, 기준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교육강사 선정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자에 게 보고하지 않고 CP 담당부서에서 CP 분야 전문지식, 업무 경험, 업무 경 력 중 일부를 반영 한 선정 기준을 직 접 마련하여 강사 선정에 활용하고 있 는 경우	(해당 없음)	CP 교육강사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한 사실이 없는 경 우	① CP 교육강사 선정기준에 대하여 회사 내부에 보고한 문건 등 관련 자 료		
				D2.1.5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 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 향을 충실히 반영하 였는가?	CP 교육계획 수립 시 이전 교육의 효 과성 평가 결과, 임 직원 VOC, 해당 업 계가 준수하여야 하 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을 모두 반영한 경 우	CP 교육계획 수립 시 이전 교육의 효 과성 평가 결과, 임 직원 VOC, 해당 업 계가 준수하여야 하 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중 3가지만 반영한 경우	CP 교육계획 수립 시 이전 교육의 효 과성 평가 결과, 임 직원 VOC, 해당 업 계가 준수하여야 하 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중 2가지만 반영한 경우	CP 교육계획 수립 시 이전 교육의 효 과성 평가 결과, 임 직원 VOC, 해당 업 계가 준수하여야 하 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중 1가지만 반영한 경우	CP 교육계획 수립 시 이전 교육의 효 과성 평가 결과, 임 직원 VOC, 해당 업 계가 준수하여야 하 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한 사실을 구체 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전체 교육계 획에 CP 관련 교육 일정 및 주제 등 개 괄적인 내용만 반영 되어 있는 경우	CP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평가 대상년도의 CP 교육계획 수 립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 문건 등 관련 자료
				D2.1.6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 되었는가? (교육완 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 기록 포 함)	(A+/A/B+/B/C) CP 교육계획에 대하여 ① 예산 집행의 적정성, ② 교육 강사 선정기준에 따른 강사의 선정 및 교육 추진, ③ 교육 시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였는지 여부, ④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CP 위반자 등 특정 특별(보수)교육의 시행 성과, ⑤ 기타 CP 교육계획에 반영된 내용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CP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실적 일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P 교육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는 경우	D2.1 정기 CP교육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자료의 실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업 내부에 자율 준수관행이 정착 되기 위해서는 임 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 로 경쟁법에 저촉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특히 최고 경영자 및 임원 (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행위의 가능 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들에게는 보다 집 중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D2.2 법위반 가능 성이 큰 부서 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 육	D2.2.1 CP 교육 계획에 미 이수자 및 CP 위반 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받 드시 시행하도록 정 하고 있는가?	CP 교육계획에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 자를 월 주기로 확 인하고 보수교육 또 는 특별교육을 의무 사항으로 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 록 정하고 있는 경 우	CP 교육계획에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 자를 반기 주기로 확인하고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의 무사항으로 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 록 정하고 있는 경 우	CP 교육계획에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 자를 연 1회 확인하 고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의무사 항으로 정한 뒤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 록 정하고 있는 경 우	CP 교육계획에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 자를 월 주기로 확 인한 뒤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권 고하도록 정하고, 보 수교육 또는 특별교 육 시행 현황만 관 리하고 있는 경우	CP 교육계획에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 자를 반기 주기로 확인한 뒤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권 고하였으나 그 현황 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CP 교육계획에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 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 계획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교육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내부 보고자료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에 활용되는 교재 가 최신 법 위반사 례 및 사전예방 방 법 등을 충실히 포 함하고 있는가?	(A+/A)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 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를 제작한 경우로 서,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내용을 반 영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B+/B)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 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또는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를 제작한 경우 로서,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내용을 반영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또는 CP 위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 재를 제작하였으나, 법 위반사례 및 사 전예방 내용의 개정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또는 CP 위 반자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를 제작하지 않 은 경우	CP 교육계획을 수립 한 사실이 없는 경 우	① CP 교육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내부 보고자료 ②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에 활용되는 교재		
				D2.2.3 CP 교육 계획에 해 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 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CP교 육을 별도로 시행하 고, 교육대상자들 에게 의견수렴을 시 행한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필 수 법규는 제외하 다)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또는 CP 위 반자를 대상으로 하 는 CP교육을 시행하 고, 교육대상자들 에게 의견수렴을 시 행한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또는 CP 위반 자를 대상으로 하는 CP교육을 시행하였 으나, 교육대상자들 에게 의견수렴을 시 행하지 않은 경우	CP교육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또는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CP 교육계획을 수립 한 사실이 없는 경 우	① CP 교육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내부 보고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업 내부에 자율 준수관행이 정착 되기 위해서는 임 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 로 경쟁법에 저촉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특히 최고 경영자 및 임원 (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행위의 가능 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들에게는 보다 집 중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 상으로 한 교 육	D2.3.1 CP 교육 계획에 최 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 (회의, 세미나, 워크 샵등도 포함)에 반 드시 참여하도록 정 하고 그에 따라 임 원에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 이 있는가?	평가 대상기간 동안 CP 교육 계획에 최 고경영자 및 전 임 원의 CP 관련 교육 참여를 의무사항으 로 규정하였고,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교 육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기간 동안 CP 교육 계획에 최 고경영자 및 전 임 원의 CP 관련 교육 참여를 의무사항으 로 규정하였고,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교 육 참여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기간 동안 CP 교육 계획에 최 고경영자 및 전 임 원의 CP 관련 교육 참여를 권장사항으 로 규정하였고,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교 육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기간 동안 CP 교육 계획에 최 고경영자 및 전 임 원의 CP 관련 교육 참여를 권장사항으 로 규정하였고,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교 육 참여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기간 동안 CP 교육 계획에 최 고경영자 및 전 임 원의 CP 관련 교육 참여를 권장사항으 로 규정하였고,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교 육 참여율이 30% 미만인 경우	평가 대상기간 동안 CP 교육 계획에 최 고경영자들과 임원 의 CP 교육 참여 여 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CP 교육계획을 수립 한 사실이 없는 경 우	①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CP 관련 외 부교육 참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CP 교육계획 수립 문건 ②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CP 관련 외 부교육 참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D2.4 CP교육-훈련 의 효과성 평 가	D2.4.1 CP 관련 교육 수행 후 효과성을 평가하 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A+/A) CP 교육 계획에 CP 교육의 효과 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경우로서 1) 효과성 평가 대상의 임직원의 범위 2)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 및 평가 후 확인된 문제에 대한 처리절차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CP 교육 계획에 CP 교육의 효과 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경우이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마련되 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 대상 임직원의 범 위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평가	CP 교육 계획에 CP 교육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 절차만 마련 하고 평가지표 및 임직원의 범위를 정 의하지 않은 경우	CP 교육 계획에 CP 교육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 절차를 마련 하지 않은 경우	CP 교육 계획을 수 립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교육의 효과성 평가 절차(예: 접수, 추적, 분석, 검토, 개선 등 조치, 공지), 평가지표, 평가대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CP 교육계획 내부 보고서 료		
			D2.4.2 CP 관련 교육의 효 과성을 평가하기 위 한 지표가 구체적으 로 마련되어 있는 가? (예: 참석률, 학 습자 만족도, 이수 율, 불만건수, 학습 성과의 달성 정도 등)	CP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종류를 세부평가지표에 제시된 예시의 경우를 포함 4가지 이상 마련한 경우로 서, 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정도 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종류를 세부평가지표에 제시된 예시의 경우를 포함 2가지 이상 4가지 미만 마 련한 경우로서, 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의 종류가 세부평가 지표에 제시된 예시 의 경우를 포함 1가 지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	CP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CP 교육 계획을 수 립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① CP 교육의 효과성 평가 절차(예: 접수, 추적, 분석, 검토, 개선 등 조치, 공지), 평가지표, 평가대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CP 교육계획 내부 보고서 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인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Ⅲ. Operation (CP의운영)	O1. 사전감시 체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위반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법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 예방 행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	(A+/A)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 및 시행되고 있는 경우로서 세부평가지표의 예시를 기준으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이 기업의 감사, 조직진단, 성과평가 등의 타 업무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우로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 및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의 감사, 조직진단, 성과평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CP 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우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이 마련·시행되었으나 세부평가지표의 예시 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평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 자료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소 3단계(상, 중, 하)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없음)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2단계(상, 하)로만 구분한 경우	(해당 없음)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 자료
				O1.1.3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A+/A) CP 관련 위험성 평가를 분기별 1회 이상 수행하면서 중간 이상 위험성을 발견하면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수행 횟수, 결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CP 관련 위험성 평가를 분기별 1회 이상 수행하면서 중간 이상 위험성을 발견하면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수행 횟수, 결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관련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수행하면서 중간 이상 위험성을 발견하면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CP 관련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중간 이상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 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Ⅲ. Operation (CP의운영)	O1. 사전감시 체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범위 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범위반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범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4 CP 관련 위험성 경감을 위해 수행한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위험성 평가 기준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A+/A) CP 관련 위험성 경감을 위해 수행한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위험성 평가 기준 개선에 반영한 경우로서, 평가기준 개선 실적 및 개선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CP 관련 위험성 경감을 위해 수행한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개선 소요가 없어 위험성 평가 기준 개선에 반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서, 위험성 경감 조치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 평가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평가를 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A+/A) 자율준수관리자가 직접 주관하는 사전업무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협의 대상의 범위, 협의 주기, 검토 대상 법규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CP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전업무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협의 대상의 범위, 협의 주기, 검토 대상 법규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업계의 필수 법규(공정거래법규는 제외한다)에 한해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CP담당부서 제외)와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전업무협의제도를 마련한 경우	사전업무협의제도가 있으나 실제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사전업무협의제도 구축 내용 및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O1.2.2 사전업무협의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 운영방법 등 관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A+/A/B+) 사전업무협의제도에 협의체의 역할, 운영방법 등 기준을 마련한 경우로서 기준의 적정성, 체계적인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전업무협의제도가 있으나 실제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사전업무협의제도 구축 내용 및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Ⅲ. Operation (CP의운영)	O1. 사전감시 체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범위 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범위반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3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A+/A/B+) 사전업무협의제도와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운영 현황, 기록의 구체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전업무협의제도와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업무협의제도 협의체 운영 회의록, 의사결정보고, 업무체크리스트, 기타 사전업무협의제도 협의체 운영 관련 기록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O1.2.4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연 2회 이상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사례의 적정성 및 CP 운영 성과의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사전업무협의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연 1회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사례의 적정성 및 CP 운영 성과의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사전업무협의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한 사례가 없는 경우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한 법규 위반 행위 예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A+/A/B+) CP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된 경우로서 책임 및 권한의 범위, 보고 체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CP 담당부서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된 경우로서 책임 및 권한의 범위, 보고 체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해당 없음)	직접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④ 직접보고체계의 구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P 운영계획 등 내부 보고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Ⅲ. Operation (CP의운영)	O1. 사전감시 체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위반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법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O1.4 내부고발 시스템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A+/A)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방지에 대한 내부고발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시스템 체계성, 대상 법규의 범위, 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에 한해 내부고발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시스템 체계성, 대상 법규의 범위, 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법규(공정거래법규를 제외한다)에 한해 내부고발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계획 및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 자료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내부고발시스템을 전 임직원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 경우	내부고발시스템을 전 임직원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나, 고발 요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내부고발시스템을 전 임직원이 활용하는 데 있어 일부 제약이 있으나,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 경우	내부고발시스템을 전 임직원이 활용하는 데 있어 일부 제약이 있고, 고발 요건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내부고발시스템의 접근 환경, 활용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A+/A/B+) 내부고발시스템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보복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방지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이익 방지의 범위, 불이익 구제 방안 구축 여부, 내부고발시스템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불이익 없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내부고발시스템의 접근 환경, 활용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②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불이익 방지가 명시된 내규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Ⅲ. Operation (CP의운영)	O1. 사전감시 체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위반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법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O1.4 내부고발 시스템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A+/A/B+)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을 마련하면서 조사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 보장의 범위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사팀의 조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내부고발시스템 관련 조사팀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내규(또는 그에 준하는 보고자료)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 (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 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내부고발시스템 소속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를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실제 보고 실적 및 보고 내용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내부고발시스템 소속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를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실제 보고 실적 및 보고 내용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사팀의 업무 및 조사 결과를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내부고발시스템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실적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보고자료(자율준수관리자에게만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O1.4.6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 결과가 CP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CP 운영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가?	CP 관리자에게 보고된 내부고발시스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CP 운영 및 기준의 개선 및 교육 사례 활용 등 CP 운영에 기여한 사례가 연 4회 이상 있는 경우	CP 관리자에게 보고된 내부고발시스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CP 운영 및 기준의 개선 및 교육 사례 활용 등 CP 운영에 기여한 사례가 연 2회 이상 3회 미만 있는 경우	CP 관리자에게 보고된 내부고발시스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CP 운영 및 기준의 개선 및 교육 사례 활용 등 CP 운영에 기여한 사례가 연 1회 있는 경우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CP 운영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II. Operation (CP의운영)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법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확화된 규정이 있는가?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을 별도로 마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이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법규(공정거래법규 제외) 위반에 대해서만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이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거나, 준수법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인사제재 유형 및 기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내 규정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또는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연 2회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제재 및 사례 방지 활동의 적정성 및 효과를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또는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연 1회 있는 경우로서, 제재 및 사례 방지 활동의 적정성 및 효과를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인사제재 또는 재발 방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 등 예산이 반영된 조직차원의 포상책(예: 직원 포상금, 격려금, 상품권 구매 비용, 기타 포상 성격의 상품 구매예산 등)이 있는가?	(A+/A)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 등 예산이 반영된 조직차원의 포상 방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경우로서 포상 방식, 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 등 예산이 반영된 조직차원의 포상 방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로서 포상 방식, 예산 규모, 예산 축소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으나 별도의 예산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이 없는 경우	①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 방안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Ⅲ. Operation (CP의운영)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법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2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공정거래법규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연 4회 이상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규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연 2회 이상 연 4회 미만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규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연 1회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규 및 CP 확산에 기여한 사례는 있으나,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규 및 CP 확산에 기여한 사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이 없는 경우	①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시상식, 사내 인트라넷 공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Ⅳ. Evaluation & Feedback (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A+/A)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원인 분석 및 검토 방법 등 절차의 적정성,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의 정도, 최고경영진 보고 절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 연 1회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원인 분석 및 검토 방법 등 절차의 적정성,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의 정도, 최고경영진 보고 절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운영에 관한 효과성 평가 또는 정기감사 절차 및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 (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A+/A)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수행 관련 인적 자원 선정 등과 관련하여 ① 자격(전공, 공정거래법규 관련 업무 경험, 감사 업무 수행 경험, 외부 자격증 보유 여부 등), ② 공정한 업무 범위 정의(자신 및 소속 부서에 관한 업무 감사 배제 여부 등) 기준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자격과 업무 범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수행 관련 인적 자원 선정 등과 관련하여 ① 자격(전공, 공정거래법규 관련 업무 경험, 감사 업무 수행 경험, 외부 자격증 보유 여부 등), ② 공정한 업무 범위 정의(자신 및 소속 부서에 관한 업무 감사 배제 여부 등) 기준 중 한 가지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마련된 내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없음)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행 관련 인적 자원 선정 기준이 없는 경우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 수행 관련 인적 자원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F (0점)	
IV. Evaluation & Feedback (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 가와 개선	자율준수프로그 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자율준수프로그 램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 램 운영을 지속적 으로 개선해야 한 다.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 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 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 영되어 있는가?	(A+/A)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CP 운영 관련 감사 계획을 타 감사 사항과 구분하 여 독립적으로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업 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의 반영 정도, 이 전 정기감사 결과 반영 여부, 기타 감사 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을 중 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CP 운영 관련 감사 계획을 타 감사 사항에 포함하 여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업계가 준수하 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의 반영 정도, 이전 정기감사 결과 반영 여부, 기타 감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평가	조직의 정기감사 계 획에 CP 운영 관련 감사 계획이 포함되 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해당 없음)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감사 기준 및 절차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 록을 관리하고 있는 가? (예: 계획서, 결 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 항 등)	(A+/A) CP 관련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타 감사 기록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 는 경우로서 운영 현황, 기록의 구체성,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B+/B) CP 관련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타 감사 기록과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 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서 운영 현황, 기록의 구체성,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없음)	CP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기록·관리하 고 있지 않은 경우	CP 정기감사를 시행 하지 않은 경우	① 정기감사 관련 기록물 관리대장 또는 현황 ② 정기감사 관련 기록물 유형별 작 성 사례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결과를 최고경 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 로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가?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결과를 최고경 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경우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결과를 최고경 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경우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결과를 최고경 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연 1회 보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결과를 최고경 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 나 보고 주기를 구 체적으로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기준은 있으나, 시행 실적이 없어 최고경영진(최고경 영자나 임원진 회 의)에게 보고한 사 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감사 계획 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CP 운영에 관한 효과성 평가 또는 정기감사 절차 및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② CP 운영에 관한 효과성 평가 또는 정기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진 또는 이 사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사회 회의록 등)

대분류	중분류	평가취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평가기준						입증서류
					A+ (100점)	A (83.333점)	B+ (66.667점)	B (50.000점)	C (33.333점)	D (16.667점)	
IV. Evaluation & Feedback (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 가와 개선	자율준수프로그 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자율준수프로그 램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 램 운영을 지속적 으로 개선해야 한 다.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2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 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 하였는가?	(A+/A)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 사를 연 2회 이상 시행한 경우로서, 절차 의 적정성, 평가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를 연 1회 이상 시행한 경우로서, 절차의 적정성, 평가의 효율성 및 실효성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평가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기준은 있으나, 시행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감사 기준 및 절차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기업의 정기 감사 시행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E1.2.3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감사 를 통해 발견된 문 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서 제도 개선 및 시정조치 성과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정기 감 사를 연 2회 이상 시행하였고, 발견된 문 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서 제도 개선 및 시정조치 성과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정기 감 사를 연 1회 시행한 경우로서, 발견된 문 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정조치실 적 여부 및 제도 개선과 시정조치 성과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	(해당 없음)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감사 계획 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기업의 정기 감사 시행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E1.2.4 최고경영진(최고경 영자나 임원진 회 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 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보고하 였고, 그 내용이 CP 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 가?	(A+/A)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 사 결과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한 경우 로서, 보고의 내용, 시정조치의 수준, CP 운영 관련 경영에의 반영 정도를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평가	(B+/B)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진이 아닌 자율준수관리 자까지만 보고한 경우로서, 보고의 내용, 시정조치의 수준, CP 운영 관련 경영에의 반영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해당 없음)	CP 운영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정기 감사 기준은 있으나, 시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① 기업의 정기 감사 시행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② CP 운영에 관한 효과성 평가 또는 정기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진 또는 이 사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사회 회의록 등) ③ CP 운영에 관한 효과성 평가 또는 정기감사 결과가 CP 운영 관련 경영 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		